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557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정인, 서윤기, 이영실,
오현정, 김정환, 최기찬,
김창원, 정재웅, 이승미,
이준형, 황인구, 이병도,
황규복, 김용연, 김소양,
이광호, 김소영, 정진철,
김호평, 김정태, 최 선,
송정빈, 송아량, 문병훈,
김태호, 장상기, 김기덕,
조상호, 경만선, 이은주,
김인호, 김화숙, 신정호,
봉양순, 이상훈, 권영희,
박순규, 이호대, 노승재,
홍성룡, 이태성, 권수정,
김경영, 채유미, 최웅식,
김제리, 고병국, 전병주,
김경우, 임종국 의원(50명)

1. 주 문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가운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치료와 보호 위주의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따라서 2016년에 이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와 보호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관한 복지정책이 장애인복지영역의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행정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되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의 개정을 건의함.

3. 이송처 : 국회,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치료와 보호위주로 제공되는 상황으로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장애인과 비교하면 매우 빈곤한 것이 현실이다.
-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성과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정신병원이라는 높은 담장과 정신요양시설이라는 두꺼운 철문 앞에 가로막혀, 정신장애인이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없어 높은 담장을 넘을 수도, 두꺼운 철문을 열 수도 없는 암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법제의 연원을 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효시가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1년 제정되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을 때도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못했다. 1995년

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료전달체계 중심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2000년에 들어서며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가 장애의 유형으로 규정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정신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 및 질병관리정책 위주의 전달체계로 인해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 이처럼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지금까지도 정신장애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제15조의 제한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동하고 있으며, 2016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상에서 보듯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이원화하고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인과 차별하는 근거가 되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목표로 하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재활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은 또 다른 ‘장애 안의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인과 분리하여,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 장애인권리에 대한

협약 제19조는“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분리하며, 차별하고, 배제하여 동등하게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탈원화와 사회통합의 가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소외되어 이들의 사회통합은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구축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에의 접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되어 왔던 만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가운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상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 5. 25.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